

##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5. 8.

예천군의회의장



### 1. 개정이유

- 예천온천의 운영 사항을 조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
- 온천 개발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물 부족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온천 사용료 할인 혜택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지번 주소를 현행 법적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변경 (안 제3조)

- 현행 :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127번지
- 변경 : 예천군 감천면 온천길 27

나. 이용시간이라는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이용객 혼란 방지 (안 제5조)

- 개장시간 ⇨ 이용시간
-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함을 추가함

#### 다. 사용료 할인 대상 주민 확대 (안 제6조제1항)

- 온천장 주변주민(감천면 덕울 1·2·3리, 관현 1·2리, 천향 1·2리, 보문면 간방 2·3리)의 사용료 할인 대상에 진평1리 주민 추가
-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할인 추가

#### 라. 이용자의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(안 제9조)

- 제9조 제목을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으로 변경
- 이용자의 의무 명시 및 시설이나 설비 훼손·망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

#### 마. 입장 거절 및 제한 대상의 명확화 (안 제10조)

- 각종 전염병 질환자 → 감염병 환자로 변경

### 3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5월 14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murayzzang@korea.kr

##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관현리 127번지”를 “온천길 27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이용시간) ①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6:00부터 20:00까지로 한다.

②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를 “군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 5호 중 “천향 1·2리,”를 “천향 1·2리, 진평 1리,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감염병 환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치) 온천장은 예천군 감천면 <u>관현리 127번지</u>에 둔다.</p> <p>제5조(개장시간) 온천장 개장시간은 매일 06:00부터 20:00까지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6조(사용료) ① <u>예천군수(이하 "군수" 라 한다)</u>는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할인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li>5. 온천장 주변주민(감천면 덕울1·2·3리, 관현1·2리, <u>천향1·2리</u>, 보문면 간방2·3리)으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소지자</li> </ol>	<p>제3조(위치) ----- - <u>온천길 27</u>-----.</p> <p>제5조(이용시간) ①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6:00부터 20:00까지로 한다.</p> <p>② <u>예천군수(이하 "군수" 라 한다)</u>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사용료) ① <u>군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----- ----- <u>천향1·2리, 진평 1리</u>----- ----- ----- -----</li> </ol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9조(사용자의 관리의무) 온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온천장의 각종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파손 및 훼손시는 즉시 현물보상 조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0조(입장 거절 및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각종 전염병 질환자
2. (생 략)

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입장 거절 및 제한) -----  
-----  
-----.

1. 감염병 환자
2. (현행과 같음)

## 【 관련 근거 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